

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

(관세청 관세국경감시과, 042-481-7945)

관세청 고시 제2001- 38호('01.08.03)
관세청 고시 제2002- 42호('02.11.18)
관세청 고시 제2004- 37호('04. 9.18)
관세청 고시 제2006- 51호('06.12.22)
관세청 고시 제2009- 45호('09.08.20)
관세청 고시 제2009-118호('09.12.18)
관세청 고시 제2010- 55호('10.06.10)
관세청 고시 제2013- 64호('13.07.03)
관세청 고시 제2014- 26호('14.03.12)
관세청 고시 제2016- 15호('16.02.29)
관세청 고시 제2017- 17호('17.05.02)
관세청 고시 제2017- 32호('17.07.25)
관세청 고시 제2017- 58호('17.07.28)
관세청 고시 제2018- 38호('18.10.02)
관세청 고시 제2019- 34호('19.08.23)
관세청 고시 제2020- 9호('20.03.30)
관세청 고시 제2024- 24호('24.06.10)
[관세청 고시 제2026- 63호\('26.10.23\)](#)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고시는 「관세법」 제165조부터 제165조의5까지 및 제329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85조부터 제185조의5까지 및 제288조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장 보세사 시험

- 제2조(보세사 시험 등) ① 「관세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329조제5항제1호에 따라 관세청장이 보세사 시험업무를 위탁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국가자격검정 관련 전문기관 또는 사단법인 한국관세물류협회를 말하며(이하 "시험수행기관"이라 한다), 시험수행기관장은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보세사 시험을 실시한다.
- ② 시험수행기관장은 보세사 시험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보세구역 및 보세사의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격년제로 실시할 수 있다.
- ③ 「관세법 시행령」(이하 "령"이라 한다) 제185조제8항에 따른 보세사 시험의 공고는 관세청 및 시험수행기관 홈페이지에 공고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세관관서, 시험수행기관 본회 및 지역협회 게시판에 공고할 수 있다.

- 제3조(시험 신청 절차) ① 제2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공고된 바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보세사 시험 응시원서를 시험수행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② 제1항에 따라 보세사 시험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에는 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.

- 제4조(시험위원회 설치 등) ① 보세사 시험의 출제와 평가 등 보세사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·결정하기 위하여 시험수행기관에 보세사시험위원회(이 조에서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-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험수행기관장으로 하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회의 위원은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이론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시험수행기관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.
-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.

제 3 장 자격증 교부 및 등록

- 제5조(자격증 교부)** ① **법** (법률 제16838호) 부칙 제9조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관세행정에 종사한 경력으로 보세사 자격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보세사자격증교부(재교부)신청서에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② 제1항에 따라 보세사 자격증 교부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보세사 자격증 교부신청을 한 사람이 **법 제175조제2호**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자격증 교부내역을 등록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보세사 자격증을 교부한다.
- ③ 관세청장은 영 제185조제5항에 따라 합격한 사람이 결정된 때에는 제2조제3항을 준용하여 합격한 사람을 공고하고 합격한 사람이 **법 제175조제2호**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 시험수행기관장을 경유하여 보세사자격증을 교부한다.

- 제6조(자격증 재교부)** 제5조에 따라 보세사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이 분실 등으로 재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세사자격증교부(재교부)신청서에 재발급사유서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7조(등록절차 등) ① 법 제165조제3항 및 영 제185조제2항에 따라 보세사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보세사 등록 신청서에 입사예정 증명서 또는 재직확인 증명서를 첨부하여 법 제329조제4항 및 영 제288조제7항에 따라 세관장이 권한을 위탁한 한국관세물류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보세사 등록신청을 받은 한국관세물류협회장은 보세사 등록신청을 한 사람이 법 제175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 별지 제6호서식의 보세사 등록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보세사 등록증을 교부한 후 세관장에게 등록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한국관세물류협회장이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 전산 입력한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통보절차를 생략한다.

③ 법 제165조제3항에 따라 보세사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보세사로 근무하려는 사업장이 세관장으로부터 보세구역부호를 부여받은 **곳(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 관리부호를 부여받은 곳을 포함한다)**이어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**사업장에 근무하려는 보세사는 해당 부호를 부여받기 전에도** 보세사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.

1. 「보세창고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」 제5조에 따라 특허보세구역의 설치·운영에 관한 특허를 신청한 사업장
2. 「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」 제6조에 따라 특허보세구역의 설치·운영에 관한 특허를 신청한 사업장
3. 「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」 제32조제1항에 따라 보세판매장 통합물류창고 운영 허가를 신청한 사업장
4. 「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」 제37조제2항에 따라 보세판매장 판매물품 인도자(이하 "인도자"라 한다) 지정을 신청한 사업장
5. 「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」 제5조제1항에 따라 입주기업체 관리부호 발급을 신청한 사업장

④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근무지로 하여 보세사 등록신청을 받은 한국관세물류협회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별지 제7호서식의 보세사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.

1. 보세사 등록신청을 한 사람이 법 제175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 할 것
2. 해당 사업장이 세관장으로부터 보세구역부호를 부여받았을 것(자유무역 지역 입주기업체 관리부호를 부여받은 곳을 포함한다)

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이 운영하는 사업장 간에 등록된 보세사를 인사이동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보세사 등록 변경 신고서에 해당 보세사 재직확인 증명 서류와 인사이동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관세물류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보세사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.

1. 특허보세구역 운영인(법 제172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인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
2. 통합물류창고 운영인
3. 인도자
4.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

⑥ 제5항에 따라 보세사 등록 변경 신고서를 접수한 한국관세물류협회장은 제2항을 준용하여 보세사 등록에 관한 업무를 처리한다. 다만, 등록 변경 신고한 보세사가 법 제175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은 생략할 수 있다.

제8조(등록취소) ① 세관장은 보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고, 그 사실을 전산에 등록한 후 한국관세물류협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1. 법 제165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때
 2. 제7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등록보세사로부터 보세사의 퇴사·해임·교체통보 등을 받은 때
-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(법 제17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)된 사람은 그 취소된 날로부터 2년 내에 다시 등록하지 못한다.
-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,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보세사징계위원회의 의결 전에 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보세사징계위원회의 의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 내에 다시 등록하지 못한다. 이 경우 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.

제 4 장 보세사의 직무 등

- 제9조(직무교육) ①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보세사는 영 제185조제4항에 따른 직무교육을 연 1회(총 4시간 이상) 받아야 한다. 또한, 보세사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최초 등록 전에 기초 실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.
- ② 한국관세물류협회장은 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 및 기초 실무교육을 실시하며, 해당 교육 이수시간의 계산방법 및 교육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.
- ③ 한국관세물류협회장은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종료 후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④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직무교육 이수 이력에 따라 보세사가 소속한 보세구역에 대한 관세법상의 평가, 심사 및 혜택 등을 차등화 할 수 있다.

- 제10조(보세사의 직무) ① 영 제185조제1항제6호에서"관세청장이 정하는

업무"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보수작업과 화주의 수입신고전 장치물품확인시 입회·감독
2. 세관봉인대의 시봉 및 관리
3. 환적화물 컨테이너 적출입시 입회·감독
4. 다음 각 목의 비치대장 작성과 확인. 다만, 전산신고 등으로 관리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.

가. 내국물품 반출입 관리대장(별지 제8호서식)

나. 보수작업 관리대장(별지 제9호서식)

다. 환적화물 컨테이너적출입 관리대장(별지 제10호서식)

라. 장치물품 수입신고전 확인대장(별지 제11호서식)

마. 세관봉인대 관리대장(별지 제12호서식)

바. 그 밖에 보세화물 관련규정에서 보세사의 직무로 정한 각종 대장

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다른 규정에서 정한 직무는 그에 따른다.

제11조(보세사의 의무) ① 보세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과 세관장의 업무감독에 관련된 명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세관공무원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.

1. 보세사는 다른 업무를 겸임할 수 없다. 다만, 영업용 보세창고가 아닌 경우 보세화물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른 업무를 겸임 할 수 있다.
2. 해당 보세구역에 작업이 있는 시간에는 상주하여야 한다. 다만, 영업용 보세창고의 경우에는 법 제321조제1항에 따른 세관개청시간과 해당 보세 구역내의 작업이 있는 시간에 상주하여야 한다.
3.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알선·중개하여서는 아니된다.
4. <삭제>

② 보세사는 보세구역내에 장치된 화물의 관리와 관련하여 법령 및 화물

관계 제반규정과 자율관리보세구역 관리에 관한 규정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.

제12조(보세사 징계) ① 세관장은 보세사가 법 제165조제5항,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이 고시에서 정한 직무 및 의무를 위반한 경우 「관세법 시행규칙」 제65조의2 및 별표 5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보세사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
③ 영 제185조의3에 따라 구성된 보세사징계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, 간사는 보세사업무를 담당하는 화물주무가 된다.

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보세사에게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한국관세물류협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12조의2(주의) 세관장은 보세사가 보세화물 관리에 관한 직무 또는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「관세법 시행규칙」 제65조의2 및 별표 5의2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미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주의 조치를 할 수 있다.

제 5 장 보 칙

제13조(세부지침 제정) 시험수행기관 및 한국관세물류협회장은 관세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제2조에서 제4조까지, 제7조 및 제9조에 관한 세부지침을 정할 수 있다.

제14조(관계서류의 보존 등) 시험수행기관장 및 한국관세물류협회장은 보세사시험, 보세사 등록 및 직무교육과 관련한 서류를 5년간 비치·보존하여야 한다.

제15조(한국관세물류협회에 대한 감독) 이 고시에 정한 사항 외에 한국관세물류협회에 대한 감독은 「기획재정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」에 따른다.

제16조(보세사의 근무이력 기록·관리) ① 한국관세물류협회장은 제8조 제1항 및 제12조제4항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내역을 기록·관리하여야 한다.

② 한국관세물류협회장은 제1항에 따른 기록·관리를 위해 보세사의 근무실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, 확인한 결과를 기록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세관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세관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제16조의2(보세사의 근무현황 보고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련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운영상황 보고 또는 자율점검표 제출시 별지 제6호의2서식의 보세사 근무현황 자율점검표를 첨부하여 관할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1. 법 제174조에 따른 특허보세구역 중 보세창고, 보세공장 및 보세판매장의 운영인
2. 법 198조에 따른 종합보세사업장의 운영인
3. 「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에 따른 입주기업체 중 「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」 제7조의3에 따

라 보세사 채용 의무가 있는 자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, 「자율관리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」 제10조에 따라 자율관리보세구역 운영인이 해당 자율점검표에 제1항에 따른 점검항목의 내용을 포함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보세사 근무현황 보고를 갈음할 수 있다.

③ 세관장은 필요시 해당 보세구역에 등록된 보세사의 근무실태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 할 수 있다.

제17조(관세 행정 경력) 법 제165조제2항의 관세 행정예 종사한 경력이란 관세 행정과 직접 관련이 없는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부서를 제외한 모든 부서의 업무를 말한다.

제18조(재검토기한) 관세청장은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부 칙 <관세청 고시 제2006- 51호(2006.12.22)>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

부 칙 <관세청 고시 제2009- 45호(2009. 8.20)>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2009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관세청고시 제2009-118호(2009.12.18)>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2009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

부 칙 <관세청고시 제2010- 55호(2010. 6.10)>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2010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서식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) 부칙 제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.

부 칙 <관세청고시 제2013- 64호(2013. 7. 3)>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2013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관세청고시 제2014-26호(2014. 3. 12)>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2014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관세청고시 제2016-15호(2016. 2. 29)>

이 고시는 2016년 2월 29일부터 시행한다

부 칙 <관세청고시 제2017-17호(2017. 5. 2)>

제1조 (시행일) 이 고시는 2017.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

부 칙 <관세청고시 제2017-32호(2017. 7. 25)>

이 고시는 2017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관세청고시 제2017-58호(2017. 7. 28)>

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관세청고시 제2018-35호(2018. 10. 2)>

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관세청고시 제2019-34호(2019. 8. 23)>

이 고시는 2019년 08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관세청고시 제2020-9호(2020. 3. 30.)>

이 고시는 2020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관세청고시 제2024-24호(2024. 6. 10.)>

이 고시는 2024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관세청 고시 제2026-63호(2026. 10. 23.)>

제1조 (시행일) 이 고시는 2026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제9조의 최초 등록 전 기초 실무교육 이수에 관한 규정은
202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보세사 등록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.

(별지 제1호서식)

(앞 쪽)

보 세 사 시 험 응 시 원 서			※ 접수번호	처리기간
				즉 시
사진 (3cm×4cm)	응 시 자	① 성 명		
		②주민등록번호		
		③ 주 소	(우편번호)	
④ 연 락 처	(집)	(휴대폰)	(이메일)	
⑤ 최종학력		⑥ 해 당 여 부 ☒ 표시	☐ 관세법 제165조제1항	
⑤ 응 시 지 역			☐ 관세법 제165조제2항	
「관세법」 제165조제1항 및 제2항, 「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」 제3조에 따라 보세사 시험을 신청합니다.				
년 월 일				
신청인: (서명 또는 인)				
시험수행기관장 귀하				

보세사 시험 접수증			※ 응시번호	사진 (3cm×4cm)
①성 명		②주민등록번호	-	
이 사람은 년도 보세사 시험 응시자임을 확인합니다.				
년 월 일				
시험수행기관장				직인

※ 뒤쪽의 응시자 주의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.

210mm×297mm(일반용지 g/m²(재활용품))

(별지 제2호서식)

신청번호		처리기간	
보세사자격증교부(재교부)신청서		7 일 (결격사유확인제외)	
성명		사진 (3×4cm)	
주민등록번호			
자택주소 (우편번호)			
연락처	(집) (휴대폰) (이메일)		
자격사항 (☑ 표시)	☐ (구)관세법 제165조제1항제1호	자격증 번호	
	☐ (구)관세법 제165조제1항제2호		
	☐ 관세법 제165조		
발급구분	☐ 신규		
	☐ 재교부(사유 : 분실, 훼손, 기재변경, 기타)		
본인은 「관세법」 제165조와 「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」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보세사자격증의 교부(재교부)를 신청합니다.			
년 월 일			
신청인 : (서명 또는 인)			
관세청장 귀하			
첨부서류 :		수수료	
1. 관세행정 근무경력증명서 1부. (관세행정 경력 신규교부자에 한함)			
2. 신청인 사진 1매.		없음	
3. 재교부사유서 1부. (재교부자에 한함)			

210mm×297mm(신문용지 54g/m²(재활용품))

(별지 제3호서식)

보 세 사 자 격 증 교 부 대 장

교부 일자	자격증 번 호	성명	생년 월일	주 소	(구)관세법 제165조제1항 제1호	(구)관세법 제165조제1항 제2호	관세법 제165조	비고

(별지 제4호서식)

제 호

보 세 사 자 격 증

성 명 :

생 년 월 일 :

사 진

(3×4cm)

위 사람은 「관세법」 제165조에 따른 보세사의 자격이
있으므로 「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」 제5조에 따라
이 증서를 교부합니다.

년 월 일

관 세 청 장

(별지 제5호서식)

보 세 사 등 록 신 청 서				처리기간
				5 일 (결격사유확인제외)
주민등록번호				사 진 (3×4cm)
성 명		전화번호	(직) (자)	
등록기준지				
근무보세구역명		보세구역 부호		
근무지주소	(우편번호)			
휴대전화번호		e-mail		
<p>「관세법 시행령」 제185조 제2항과 「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」 제7조에 따라 보세사 등록을 신청합니다.</p> <p>년 월 일</p> <p>신청인 : (서명 또는 인)</p> <p>사단법인 한국관세물류협회장 귀하</p>				
첨부서류 : 입사예정 증명서 또는 재직확인 증명서 1부.				수수료
담당자확인사항 : 보세사자격 여부				없 음

(별지 제5호의2서식)

보세사 등록 변경 신고서						
신청인	상 호			사업자등록번호		
	주 소 (전화번호)					
변경내역	보세사 성명 (자격증 번호)	변경 전		변경 후		보세사 서명
		보세구역명	보세구역부호	보세구역명	보세구역부호	
<p>「관세법 시행령」 제185조제2항과 「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」 제7조에 따라 보세사 등록 변경을 신고합니다.</p> <p>년 월 일</p> <p>신청인 : (서명 또는 인)</p> <p>사단법인 한국관세물류협회장 귀하</p>						
첨부서류 :					수수료	
1. 보세사 재직확인 증명 서류 1부.						
2. 인사이동 증명 서류 1부.					없 음	
3. 해당 보세사 사진 1매.						

210mm×297mm(신문용지 54g/m²(재활용품))

(별지 제6호서식)

보 세 사 등 록 대 장

등록 일자	등록 번호	자격증 번호	성명	생년월일	주소	보세구역명	비고

(별지 제6호의2서식)

보세사 근무현황 자율점검표

보세구역명 :

점검일자 : / 점검자 : (서명)

점검사항	점검결과
① 보세화물관리를 위한 보세사 채용 여부	보세사 채용수 []명
② 보세사가 아닌 자에게 보세사의 업무(영 제185조제1항의 ‘보세사의 직무’ 참조)를 수행하게 한 사례가 있는지 여부	☐ 없음 ☐ 있음(내역: 붙임)
- 보세사 업무대행 신고서 및 증빙자료를 사전에 세관장에게 제출하였는지 여부(2개월의 범위 내 업무대행)	☐ 업무대행자 세관 신고 ☐ 업무대행자 세관 미신고
③ 보세사 채용, 해고, 교체 시 세관 통보 의무	☐ 통보(내역: 붙임) ☐ 통보지연(내역: 붙임) ☐ 통보누락(내역: 붙임)
④ 보세사 해고 시 2개월 이내 채용 의무 (다른 보세사가 없는 경우에 한함)	☐ 미해당 ☐ 2개월 이내 채용 ☐ 2개월 경과 채용
⑤ 타 업무 겸임 여부 (보세사는 타 업무를 겸임할 수 없음. 다만, 영업용 보세창고가 아닌 경우 보세화물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타 업무 겸임 가능)	☐ 미해당 ☐ 타 업무 겸임(내역: 붙임)
⑥ 보세구역에 작업이 있을 때 보세사 상주근무 여부 (다만, 영업용 보세창고의 경우에는 관세법 제321조제1항에 따른 세관개청시간과 해당 보세구역내 작업이 있는 시간에 상주하여야 함)	☐ 상주 ☐ 미 상주
⑦ 직무 관련 부당한 금품 수수, 알선·중개 사례 여부	☐ 없음 ☐ 있음(내역: 붙임)

210mm×297mm(일반용지 60g/m²(재활용품))

(별지 제7호서식)

보 세 사 등 록 증

등 록 번 호 :

등 록 일 자 :

보 세 구 역 명 :

(보세구역부호)

주 소 :

성 명 :

생 년 월 일 :

자격증 번호 :

사 진
(3×4cm)

위 사람은 「관세법」 제165조제2항과 「보세사제도
운영에 관한 고시」 제7조에 따라 보세사 등록을 필하였기에
이 증서를 교부합니다.

20 년 월 일

사단법인 한국관세물류협회장

(별지 제8호서식)

내국물품 반출입관리대장

일련 번호	반입내용				반출내용		재고현황	비고
	반입 일자	품명	규격	반입 수량	반출 일자	반출 수량		

(별지 제9호서식)

보수작업 관리대장

일련 번호	화 주	화물관리 번호	B/L번호	품명	규격	수량	보수작업 승인번호	작업기간	작업내용	작업 완료일	확인등록 신청번호	작업자	확인자 (입회자)

(별지 제10호서식)

환적화물 컨테이너적출입 관리대장

일련 번호	신고인	작업기간	적 출 내 역						적 입 내 역					
			컨테이너번호	화물관리번호	B/L번호	품 명	수 량	선적지	컨테이너번호	화물관리번호	B/L번호	품 명	수 량	목적지

297mm×210mm(일반용지 60g/m²(재활용품))

(별지 제11호서식)

장치물품 수입신고전 확인대장

일련번호	신청인	확인일자	화물관리번호	B/L번호	품명	수량	장치위치	확인사항	확인결과	입회자	비고

297mm×210mm(일반용지 60g/m²(재활용품))

(별지 제12호서식)

세 관 봉 인 대 관 리 대 장

세 관 봉인번호	사 용 년 월 일	컨테이너 번 호	보세운송신고 (승인) 번호	취 급 자			도 착 지 세 관		비 고	수 량(개)	사용(개)	재 고(개)
				직 급	성 명	날 인	세관명	봉인회수일자				

297mm×210mm(일반용지 60g/m²(재활용품))